

『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률 「공직자윤리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2조)
-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(안 제2조제1항)
 - 위원장 포함 5인 → 7인으로 민간위원 2명 증원
-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조)
-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직자윤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공직자윤리법」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2명을 증원하여 7인으로 구성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며,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

-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증원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,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어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